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 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4조제1항)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에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최대 1년 6개월) 연장을 허용하도록 개선함

나.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29조제1항, 제5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분담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내·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함
라.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 정비(안 제9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신설로 육아휴직을 주 단위(1주 또는 2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월 단위의 육아휴직 감액 기준을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1주 또는 2주)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1년 6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사용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

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동안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제29조제5항 전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육아휴직등에”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2.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9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 단위로 산정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

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일 단위로 환산한 후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조업시작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분담지원금 지급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 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 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 원금을 지급한다.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 터 <u>1년 6개월</u> 이내에 이전, 신 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 이 시작될 것 <단서 신설>	3. ----- -- <u>6개월</u> ----- ----- ----- . 다만, 사업의 이 전, 신설 또는 증설로 기간이 <u>추가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 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 다.</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 ① ----- -----

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1. 삭 제

2.·3. (생 략)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

2.·3. (현행과 같음)

4.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사용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단서 삭제>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
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
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
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
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
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
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
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
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동안 업무분담자
를 지정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음
각 호에 따라 -----

-----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⑥·⑦ (생략)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한

-----.

-----.

1.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2.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⑥·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다)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

나. (생략)

2. (생략)

③ ~ ⑤ (생략)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 -----

-----.

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단서 신설>

----- .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 단위로 산정할 수 없
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육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일 단위
로 환산한 후 해당 기간에 해당
하는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
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